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5년 2월 4일

나. 발 의 자 : 양진오, 강승수, 권기만, 김근아, 김복자
김태근, 박세진, 안주찬, 정하영, 허 복
(10명)

다. 회부일자 : 2015년 2월 5일

라. 상정일자 : 2015년 2월 12일

제1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양진오 의원

나. 제안이유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원을 일부 조정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함.

다. 주요내용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조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수정(안 제4조제2항제1호~8호, 제7항)
-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수정(안 제10조)

라. 참고사항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백 인 업

○ 본 조례안은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조정을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은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조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수정(안 제4조제2항제1호~8호, 제7항)
-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수정(안 제10조)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편성과 적절한 관리를 도모하고, 편성과정에서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보조금의 조정 등에 관하여 검토·심의하기 위해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구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임.

-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